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항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1. 의결주문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 등의 표준화, 관련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등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1268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계기비행절차업무, 항공교통업무, 항공정보업무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용에 필요한 공통업무(인력 수급, 교육·훈련, 시설·장비 유지관리, 업무 표준화 및 평가, 통계 관리 등)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군 관제기관이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하여 실제 수행하는 항공교통관제업무뿐만 아니라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추가로 위탁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및 통계의 수집·작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18조제2항 신설)

- 나. 항공교통업무, 계기비행절차의 설정 및 공고,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표준화 및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평가, 인력 수급 및 교육훈련 등 공통업무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일괄 위임하여 업무 수행체계를 일원화(안 제26조제2항)
- 다.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명확히 위임(안 제26조제2항제8호의2 신설)
- 라. 군 관제기관이 군용비행장을 이용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해 수행하는 항공교통업무를 반영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 외에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국방부장관에게 추가로 위탁(안 제26조제3항제4호)
- 마. 시행령 개정사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부칙 제2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방부와 사전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 00. ~ 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통계의 수집 및 작성(민간항공기에 한한다)을 위해 군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18호 중 “법 제58조제2항제2호·제4호”를 “법 제58조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25호의2 및 제30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공(항공교통본부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표준화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비행절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공고

8의2. 법제89조제3항에 따른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유상·무상 제공

8의3.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제26조제3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를 삭제한다.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량
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8항제1호의 “비행계획의 승인”을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
승인”으로, 제3호의 후단에 “(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로
서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않고 대한민국 내
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는 제외
한다)”를 신설하고, 제4호의 “항공교통업무에 관한”을 “항공기의 이동
· 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으로, “항공교통
의 안전을 위한”을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로 하고, 제3호
의2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3의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

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경량항공기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나.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다.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제54조제3항의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비행장 설치자(이하 이 항에서 “비행장 설치자”라 한다)가”를 “군대의 장(이하 이 항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라 한다)이”로, “주한미군사령관 또는 비행장 설치자(제4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에게 각각”을 “주한미군사령관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비행계획의 승인”을 “비행제한공역에서의 비행승인”으로, 제3호의 후단에 “(두 나라 이상을 비행하는 무인항공기로서 대한민국 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하지 않고 대한민국 내를 운항하여 대한민국 밖에 착륙하는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는 제외한다)”를 신설하고, 제4호의 “항공교통업무에 관한”을 “항공기의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으로, “항공 교통의 안전을 위한”을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로 하고, 제3호의2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경량항공기 대하여 준용되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통제공역에서의 비행허가

나.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대한 지시

다. 법 제12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비행장 또는 공항 이동지역에서의 지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 에 관한 사항) ① (생략) <u><신설></u>	제18조(항공교통안전의 협조 요청 에 관한 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9조 의2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교통업무등의 표준화, 통계 의 수집 및 작성(민간항공기에 한한다)을 위해 군기관에 협조 를 요청할 수 있다.</u>
②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 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 1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위 임한다	제26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위 탁) ① ----- ----- ----- -----.
1. ~ 17. (생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법 <u>제58조제2항제2호·제4 호</u>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 외한다)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항공안전관리시스 템의 승인 및 변경승인	18. - <u>제58조제2항제4호</u> ----- ----- ----- -----
25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u>계기비행절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u>	<u><삭제></u>

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준 출발·도착 절차, 접근
절차 및 항공로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공고(지방
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항공로의 설정·공
고는 제외한다)

26. ~ 29. (생략)

30.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
정보의 제공(지방항공청장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하며, 간
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
외한다)

31. ~ 60. (생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위
임한다.

1. ~ 2의2. (생략)

<신설>

3. (생략)

3의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다
음 각 목의 계기비행절차 설정
· 공고

26. ~ 29. (현행과 같음)

<삭제>

31. ~ 60. (현행과 같음)

② -----

-----.

1. ~ 2의2. (현행과 같음)

2의3.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의 표준화

3. (현행과 같음)

3의2. ----- 계기
비행절차(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공고된
공역을 사용하는 항공기의 표

가. 항공로

나. 항공교통본부장 관할구역
에서의 계기비행절차

3의3. ~ 6의2. (생략)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
정보의 제공(항공교통본부장
의 관할구역에서만 해당한다)

8. (생략)

<신설>

<신설>

9. ~ 12. (생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
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국방부장관의 관할구역에
서의 권한만 해당한다)을 국방
부장관에게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78조제3항에 따른 계기
비행절차의 설정·공고(항공
로의 설정·공고는 제외한다)

3. (생략)

준출발·도착 절차, 접근 절
차 및 항공로 등을 말한다. 이
하 같다)의 -----

<삭제>

<삭제>

3의3. ~ 6의2. (현행과 같음)

7. -----
----- 제공

8. (현행과 같음)

8의2. 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항
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유상·
무상 제공

8의3. 법 제89조의2제1항 각 호
에 따른 업무

9. ~ 12.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
교통관제 업무의 제공

5. ~ 6. (생략)

7.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
정보의 제공

8. ~ 9. (생략)

④ ~ ⑩ (생략)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5
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관할구역에서의 업무만
해당한다)를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게 위탁한다.

1. (생략)

2.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항공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간
행물 형태로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

3. (생략)

4. -----
----- 제공,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항공기 또는 경
량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
언 및 정보의 제공,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 또는 경
량항공기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 6. (현행과 같음)

<삭제>

8. ~ 9. (현행과 같음)

④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과 같음)

⑫ (생 략)	⑫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254